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마약류 정보 및 자살유발정보의 유통방지〉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71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마약류 정보 및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함(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등)	3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 등 조치(안 제44조의11 신설)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4. 8. 20.

다. 회 부 일 : 2024. 8.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1. 마약류 정보 및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함 (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다음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u> 」에서 금지하는 <u>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u>

의약품·대마)¹⁾ 사범은 2020년 18,050명, 2021년 16,153명, 2022년 18,395명, 2023년 27,61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다크넷(Darknet)²⁾이나 텔레그램 등 인터넷·SNS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자살 실행 영상이 실시간 중계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³⁾의 유통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실시한 결과, 활동 기간 중 자살유발정보 및 자살유해정보 총 41,505건이 신고된 바 있음⁴⁾.

○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 정보 및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종류 및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1 참조

2) 다크넷(Darknet)이란 사용자가 익명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접속정보(IP 주소, 데이터 흐름 등)를 소프트웨어(Tor 또는 I2P 등)를 통해 암호화한 후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로서, 인권운동 및 언론 자유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마약, 총기, 음란물 밀매,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줄인’, 경찰청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캡스’와 활동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등 총 68명이 참여함(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5) 자살유발정보와 자살유해정보의 구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2 참조

정보(불법정보)⁶⁾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어떠한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을 명할 수 있게 됨⁷⁾.

○ 다만, 마약류 정보 및 자살유발정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이미 현행 제44조의7

-
- 6)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개정 실익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⁹⁾,

- 「형법」 제252조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⁰⁾.

○ 이에 따라 현재도 마약류 정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쳐 삭제 등 차단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8) 현행법상 마약류 단속 규정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3 참조

9)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마약류 정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시정요구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마약류 정보	17,020	17,020	26,013	26,013	30,503	30,503
자살유발정보	713	713	1,333	1,046	477	466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마약류 정보 및 자살유발정보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현행법상으로도 해당 정보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호 신설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마약류 정보 및 자살유발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이미 해당하여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 등 조치(안 제44조의11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신고 또는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4조의11제1항).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안 제44조의11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11(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의4 또는 제6호의5에 해당되는 사정을 신고 또는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삭제·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① 음란 정보, ② 명예훼손 정보, ③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 ④ 마약류 정보, ⑤ 자살유발정보 등 일부 불법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처리 거부·정지 등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심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법정보 신고 절차도 운영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민원(불법·청소년유해정보) 처리 흐름도>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불법 정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불법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할 때,
-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개정안 제44조의11과 현행 제44조의7 비교>

	개정안 제44조의11	현행 제44조의7
삭제대상 정보	- 음란 정보 - 명예훼손 정보 -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 - 마약류 정보 - 자살유발정보	- 불법정보 * 개정안 제44조의11에 따른 삭제대상 정보는 모두 불법정보에 포함
조치 요건	- 신고 또는 삭제요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
조치 내용	-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	-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및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범위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조치대상 정보 중에는 해당 정보가 유통된 구체적인 맥락이나 정황을 파악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¹¹⁾,

불법성이 불분명한 정보까지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로서는 업무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고, 이용자로서는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처리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 보임.

- 따라서 이용자의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직접 처리 범위를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하고,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방심위로 연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조치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현행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과 달리 마약류 정보 등 일부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신고·삭제요청에 따른 삭제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 정보 유통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불법정보까지 조치대상 정보를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의 조치대상에 포함되는 명예훼손 정보(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서 현행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침해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삭제 등 조치가 가능하므로¹²⁾, 개정안에

11) 가령 SNS상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메트암페타민은 ‘가루’, ‘술’, ‘크리스탈’ 등, MDMA는 ‘캔디’ 등의 은어로 지칭되고 있음(「2022 마약류 범죄백서」)

12)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

다른 조치대상으로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 셋째, 현행 제44조의7 제2항 단서는 명예훼손 정보와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³⁾, 개정안에는 동일한 정보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치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류·자살유발정보 등 주요 불법·유해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 입장임.

다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그

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외의 불법정보를 구분하여, 전자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삭제·임시조치 등을 규정하되 제44조의11보다는 제44조의2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또한, 사업자의 과도한 임시조치 남발을 막고 판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유사 사례¹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일부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삭제·임시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기준 또는 범주가 모호하고,

동일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별로 불법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법정보가 아닌 정보까지 과잉조치될 우려가 있고, 영세사업자에게까지 판단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A”)는 사업자가 불법정보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 요청을 하는 등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등 개정안에 따른 조치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참고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거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9. (생략)

※참고 2 : 자살유발정보와 자살유해정보의 구분

구분	자살유발정보	자살유해정보
유형	-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자해 사진 및 동영상 정보 -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 -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법적 처벌	- 법적 처벌 대상	- 법적 처벌 대상 아님 - 계도 및 유포·확산 방지 대상

(출처: 보건복지부, 2022 자살예방백서)

※ 참고 3 : 현행법상 마약류 단속 규정

법규	금지 행위	처벌규정	형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등	제58조~제68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 업으로서 한 불법수익 - 불법수익의 은닉·가장 - 불법수익의 수수 - 마약류 물품의 수입·선동 등	제6조~제18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벌금 병과)
「형법」	- 아편 등의 제조 - 아편흡식기의 제조 -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아편 흡식 및 동 장소 제공 등	제198조~제206조	10년 이하의 징역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4호, 제6호, 제7호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 동법 제59조 제1항~제3항, 제60조에 규정된 죄	제11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출처: 「2023 마약류 범죄백서」)

문 의 처

02)6788-5230